

[외국환거래법 정오표(21. 08. 30기준)]

근거법령

※외국환거래법 : [시행 2021.9.16] [법률 제18244호, 2021.6.15.]

※외국환거래법시행령 : [시행 2021.6.8] [대통령령 제31723호, 2021.6.8]

※외국환거래규정 : [시행 2021.6.18.] [기획재정부고시 제2021-11호, 2021.6.18]

| Page | 오 | 정 |
|------|--|---|
| 241 | 12째줄 ▪ 환어음·약속어음· 여행자카드 ·상품권·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,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· 등 . | ▪ 환어음·약속어음·상품권·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,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. |
| 247 | 밑에서 3째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|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<u>제52조제3호</u>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|
| 255 | 목차표 3. 등록절차 4. 등록내용의 변경 등 5. 업무 수행의 기준 6.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시 인가 | <u>3. 사전검토</u> <u>4.</u> 등록절차 <u>5.</u> 등록내용의 변경 등 <u>6.</u> 업무 수행의 기준 <u>7.</u>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시 인가 |

| Page | 오 | 정 |
|------|--|--|
| 255 | <p>그림</p> <p>외국환업무 취급기관 "등"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회사 "등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·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·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전영업자 · 소액해외송금업자 ■ 외국환중개회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통화의 매매, 교환, 대여의 중개 ·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| <p>외국환업무 취급기관 "등"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회사 "등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·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·추심 및 수령 · 거주자/비거주자와의 예금, 금전대차, 보증 ·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· 신탁·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등 ·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등 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전영업자 · 소액해외송금업자 · 기타전문외국환업무 ■ 외국환중개회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통화의 매매, 교환, 대여의 중개 ·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|
| 256 | 2째줄 | 2째줄 |
| 256 | <p>밑에서 6째줄</p> <p>신설</p> | <p>1. 개요 (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13조 제9항)</p> <p>3. 사전검토 (영 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)</p> <p>(1) 사전검토의 요청</p> <p><u>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<p>(2) 사전검토 및 같음</p> <p><u>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</u></p> |

| Page | 오 | 정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<p><u>터 20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)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|
| 256 | <p>밑에서 2째줄 신청서에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| <p>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</p> |
| 257 | <p>2째줄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| <p>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이나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“금융감독원장”이라 한다)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요건 (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)을 갖추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|
| 256 ~ 258 | <p>목차 번호수정 3. 등록절차 4. 등록내용의 변경 등 5. 업무 수행의 기준 6.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시 인가</p> | <p>4. 등록절차 5. 등록내용의 변경 등 6. 업무 수행의 기준 7.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시 인가</p> |
| 257 | <p>밑에서 11째줄 (4) 등록증의 교부 (영 제13조 제5항)</p> | <p>(4) 등록증의 교부 (영 제13조 제8항)</p> |
| 269 | <p>밑에서 3째줄 신청서에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| <p>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</p> |

| Page | | 오 | 정 |
|------|------|---|---|
| 273 | 16째줄 | 신청서에 대차대조표 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| 재무상태표 ·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 |
| 305 | 10째줄 |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|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|
| 341 | 9째줄 | (13) 조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| (13) 조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|
| 367 | 5째줄 | (2)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(영 제32조 제1항) (3) 신고와 신고수리(申告受理)는 제15조제1항(지급과 수령)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. | (2)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신고(수리)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(수리)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,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(수리)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신고인·대리인·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. (규정 제7-4조) (3)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. (규정 제7-4조) |
| 370 | 12째줄 |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·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|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·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-11조(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)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|